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14 선고 2021가단1016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9.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 11. 1. 접수 제1094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판사 이은정

별지